

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상담위원 공개모집 공고

- 중소기업 애로해결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를 모집합니다 -

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중소기업의 각종 애로를 인터넷(기업마당), 전화(☎1357콜센터), 방문으로 연계하여 상담에서 현장해결까지 지원하는 비즈니스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이에 상담을 전담할 분야별 전문가를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12월 23일

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

1. 모집분야 및 지원자격

○ 모집분야

분 야	창업	경영전략	마케팅 /디자인	법무	인사/노무	수출입	기술/특허	정보화
모집인원	1명	1명	1명	4명	7명	3명	2명	1명

○ 지원자격 : 자격기준([별지4] 참조)을 충족하고 비즈니스지원단 활동이 가능한 자

○ 아래 해당하는 경우 신청 불가

- 「비즈니스지원단 운영지침」에 따른 사업 참여 제한 중인 자 [별표1]
- PC 및 인터넷을 활용하여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자
- 다른 지방청과 상담위원 협약 체결하여 활동 중인 자

2. 상담위원 근무조건

- 주요 업무 : 인터넷, 전화, 방문(면담), 현장 출장 등을 통해 중소기업이 요청하는 경영 애로를 상담하고 필요시 현장클리닉* 추천 업무 수행

* 현장클리닉 : 상담위원의 상담에서 해결되지 않은 애로해결을 위해 지원단이 지원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제공하는 자문

- 근무일 : 월 1~3회 근무(근무시간 09:00~18:00)

분 야	창업	경영전략	마케팅/디자인	법무	인사/노무	수출입	기술/특허	정보화
상담요일	월~목	화, 목	화, 목	월, 수, 금	월~금	월, 수, 금	목	금

* 분야별 상담 요일은 변동될 수 있음

- 근무지

- 과천 : 경기 과천시 관문로 47, 정부과천청사 1동 1층 서울중기청
- 용산 :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69, 102동 5층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

* 지정 근무지 외에 이동상담 신청이 있는 경우 출장 상담이 발생할 수 있음

- 수 당 : 22만원/일 (8시간 근무 기준, 점심시간 제외)

- 활동기간(협약기간) : '25. 2. 1. ~ '25. 12. 31.

* 협약기간 종료 후 재협약을 통해 활동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

3. 접수기간 : '24. 12. 23.(월) ~ '25. 1. 7.(화)

4. 접수처 및 제출서류

- 접수처

- (이메일 접수) pjh88@korea.kr, 스캔본 접수

- 제출서류 (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)
 - 비즈니스지원단 상담위원 신청서 1부 [별지1]
 - 개인정보 이용·수집에 대한 동의서 1부 [별지2]
 - 자기소개서 및 상담위원 활동계획서 1부 [별지3] : 신청 분야 경력, 전문성, 상담위원으로 근무 적합성 등을 중심으로 기술(A4용지 2페이지 이내)
 - 증빙서류 : 비즈니스지원단 자격기준 구비서류(필수), 경력증명서(경력 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 가입내역서), 학위 수여 증명서, 상담 및 컨설팅 실적에 대한 시행기관 확인서, 컴퓨터 및 전산 자격증 등 신청서 내용을 입증할 서류, 표창장 사본 등
- * 접수마감 시까지 제출서류 및 증빙서류 미제출시 평가에 반영하지 않음(추가 접수하지 않음)

5. 평가방법 : 1차 서류심사(2배수 이내 선발), 2차 면접 심사

-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

6. 추진일정 (향후 변동될 수 있음)

- 서류 심사 결과 및 면접일정 공지 : '25. 1. 15.(수)
- 면접 결과 공지 : '25. 1. 24.(금)
- 협약 : '25. 1. 27.(월) ~ '25.1.31.(금)
- 상담위원 활동(협약기간) : '25. 2. 1. ~ '25. 12. 31.

- * 서류 및 면접 결과는 서울중기청 및 비즈니스지원단 누리집을 통해 지정된 날짜에 공지
- * 최종 선발된 자가 협약을 포기하거나 협약기간 중 협약을 해약하는 경우 차점자와 협약 진행할 수 있음

7. 문의처

-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담당자(☎02-2110-6307, 6311)

- [별지] 1. 비즈니스지원단 상담위원 신청서
 2.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대한 동의서
 3. 자기소개서 및 상담위원 활동계획서
 4. 비즈니스지원단 등록자격기준 및 구비서류

작성요령 및 구비서류

1) 기본정보 중 지원분야는 **창업, 경영전략, 마케팅/디자인, 법무, 인사/노무, 수출입, 기술/특허, 정보화** 중 선택 작성

- “[별지4] 비즈니스지원단 등록자격기준 및 구비서류”를 확인하여 본인이 해당하는 지원분야 **전문 자격기준의 구비서류를 반드시 제출**하여야 함

- 예시 : 법무분야 지원한 변호사의 경우

신청서에 **지원분야 법무, 비즈니스지원단 등록자격에 변호사**로 작성하고
구비서류로 “**등록증 사본**”을 제출

지원분야	법무	비즈니스지원단 등록자격	변호사
------	----	-----------------	-----

지원분야	전문 자격기준	구비서류
법무	① 변호사	등록증 사본
	② 법무사	등록증 사본
	③ 법무분야 박사학위 소지자	학위증명서

2) 전공 및 학위 : 관련 분야 전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**학위 수여증명서** 등 제출

3) 관련 분야 경력 : **경력증명서 제출**

- 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(기업의 폐업 등) 사업장 확인이 가능한 **국민연금 가입내역서** 등 대체서류 제출 가능

4) 추가 상담가능 분야 : 1)에서 선택한 상담분야 외에 [별지4]의 지원분야 중 전문 자격 기준을 구비하고 있으며, 추가 상담이 가능한 분야가 있는 경우 작성

- 동일분야 응시자 중 타 분야 상담 가능자 우대

- “[별지4] 비즈니스지원단 등록자격기준 및 구비서류”를 확인하여 본인이 기입한 분야의 **전문 자격기준의 구비서류를 반드시 제출**하여야 함

5) ‘20년 이후 수행한 정부(공공)기관 시행 상담 및 컨설팅 수행 실적

- 관련 증빙으로 **시행기관의 확인서**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

- “비즈니스지원단 상담위원 신청서”에 내역을 작성하지 않고 증빙만 제출하거나, 내역은 작성 하였으나 증빙을 첨부하지 않은 경우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

6) 전산 및 컴퓨터관련 자격증 보유현황

- 정보처리(산업)기사, 사무자동화산업기사, 컴퓨터활용능력자격증, 워드프로세서 등 전산, 컴퓨터 활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제출

7) 기업지원관련 정부포상 실적

- 훈장, 포장, 대통령, 국무총리, 장관, 청장 포상 내역만 인정 : **표창장 사본**

【별지 2】

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대한 동의서

본인은 비즈니스지원단 상담위원 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위 업무를 위임받은 자가 신청서류 심사 및 면접 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제반사항을 이해하고 있으며, 이를 위해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를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제1호,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상담위원 선정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 수집 및 이용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.

년 월 일

□ 신청자(동의자)

· 성 명 (서명)

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귀하

상담위원 선정을 위해 수집 및 이용되는 정보자료의 범위

-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목적 : 비즈니스지원단 상담위원 선정
-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: 선정심사에 필요한 개인 인적 제반사항
 - 신청서 및 자기소개서, 활동계획서 등 제출서류에 포함된 개인정보
-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: 개인정보 수집 동의일로부터 3년
- 지원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 거부할 수 있으며, 동의 거부시 비즈니스지원단 상담위원 신청이 제한됩니다.

【별지 3】

자기소개서 및 상담위원 활동계획서 (2페이지 이내 작성)

자기소개서

상담위원 활동계획서

【별지 4】

비즈니스지원단 등록자격기준 및 구비서류

[1] 자격기준 구비서류

지원분야	전문 자격 기준	구비서류
창업	① 경영지도사(전 분야)	등록증 사본
	② 기술지도사(전 분야)	등록증 사본
	③ 명장(전 분야)	등록증 사본
	④ 창업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	학위증명서
	⑤ 창업 분야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자	재직증명서
	⑥ 창업보육 전문 매니저 자격증(5년 이상 경력자)	자격증·컨설팅경력증명서
	⑦ 중소기업상담회사 경력자(5년 이상)	컨설팅경력증명서·중소기업 상담회사 등록증
	⑧ 중소기업지원 공공기관 관련 분야 경력자(10년 이상)	경력증명서
	⑨ 가맹거래사	등록증 사본
	⑩ 대한민국산업 현장 교수(전 분야)	위촉장 사본
	⑪ 일반행정사(중소기업지원경력 5년 이상)	자격증·컨설팅경력증명서
경영 전략	① 경영지도사(전 분야)	등록증 사본
	② 기술지도사(전 분야)	등록증 사본
	③ 명장(전 분야)	등록증 사본
	④ 경영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	학위증명서
	⑤ 경영 분야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자	재직증명서
	⑥ 중소기업지원 공공기관 관련 분야 경력자(10년 이상)	경력증명서
	⑦ 대한민국산업 현장 교수(전 분야)	위촉장 사본
	⑧ 일반행정사(중소기업지원 경력 5년 이상)	자격증·컨설팅경력증명서
마케팅· 디자인	① 경영지도사(마케팅)	등록증 사본
	② 마케팅/디자인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	학위증명서
	③ 마케팅/디자인 분야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자	재직증명서
	④ 마케팅/디자인 분야 경력자(5년 이상)	컨설팅경력증명서
	⑤ 중소기업지원 공공기관 관련 경력자(10년 이상)	경력증명서
	⑥ 대한민국산업 현장 교수(디자인)	위촉장 사본

지원분야	전문 자격 기준	구비서류
법무	① 변호사	등록증 사본
	② 법무사	등록증 사본
	③ 법무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	학위증명서
	④ 법무 분야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자	재직증명서
	⑤ 중소기업지원 공공기관 관련 분야 경력자(10년 이상)	경력증명서
인사 노무	① 공인노무사	직무개시 등록증 사본
	② 경영지도사(인적자원관리)	등록증 사본
	③ 변호사	등록증 사본
	④ 인적자원관리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	학위증명서
	⑤ 인적자원관리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자	재직증명서
	⑥ 중소기업지원 공공기관 관련 분야 경력자(10년 이상)	경력증명서
	⑦ 대한민국산업 현장 교수(HRD)	위촉장 사본
수출입	① 관세사	등록증 사본
	② 무역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	학위증명서
	③ 무역 분야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자	재직증명서
	④ 수출입분야 경력자(5년 이상)	컨설팅경력증명서
	⑤ 중소기업지원 공공기관 관련 분야 경력자(10년 이상)	경력증명서
기술	① 기술지도사(전 분야)	등록증 사본
	② 기술사(전 분야)	자격증 사본
	③ 기능장(전 분야)	자격증 사본
	④ 명장(전 분야)	등록증 사본
	⑤ 경영지도사(전 분야)	등록증 사본
	⑥ 기술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	학위증명서
	⑦ 기술 분야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자	재직증명서
	⑧ 기술 분야 경력자(5년 이상)	컨설팅 경력증명서
	⑨ 중소기업지원 공공기관 관련 분야 경력자(10년 이상)	경력증명서
	⑩ 대한민국산업 현장 교수(유관분야)	위촉장 사본

지원분야	전문 자격 기준	구비서류
특허	① 변리사(전 분야)	등록증 사본
	② 특허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	학위증명서
	③ 특허 분야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자	재직증명서
	④ 특허분야 경력자(5년 이상)	컨설팅 경력증명서
	⑤ 중소기업지원 공공기관 관련 분야 경력자(10년 이상)	경력증명서
정보화	① 기술지도사(정보처리,정보기술관리)	등록증 사본
	② 기술사(정보처리)	자격증 사본
	③ 명장(정보처리)	등록증 사본
	④ 정보화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	학위증명서
	⑤ 정보화 분야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자	재직증명서
	⑥ 정보화 분야 경력자(5년 이상)	컨설팅 경력증명서
	⑦ 중소기업지원 공공기관 관련 분야 경력자(10년 이상)	경력증명서
	⑧ 대한민국산업 현장 교수(정보통신)	위촉장 사본

- * 경력자(5년 이상) : 컨설팅 경력에 한하며 인정 가능 (컨설팅 관련 업무 내용 필수 기재)
 - 컨설팅사 근무자 제출 서류 : 재직(경력)증명서, 4대보험 가입내역서
 - 컨설팅사 미 근무자(프리랜서) 제출 서류 : 컨설팅 계약서 또는 컨설팅 실적증명서 (정부 기관 인정서류) (연도별 최소 1건 이상, 총 5건 이상 제출 必)
- * 모든 등록증, 자격증을 비롯한 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여야 한다.
- * 중소기업상담회사 :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에 근거해 총괄기관에 등록된 회사
- * 중소기업지원 공공기관 : 법률상 근거가 있는 중소기업지원 공공기관 (ALIO(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)에서 조회되는 공공기관에 한함, 일반 시중은행은 해당 없음)
- * 명장 : 노동부 ·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선정한 명장
- * 대한민국 산업현장 교수 : 노동부 ·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선정한 대한민국 산업현장 교수 (위촉 기간 내)

【별표 1】

비즈니스지원단 사업참여 제한기준

자격	제재	위반사항
지원단	경고	① 제8조 제3항에 의한 지원단 정보 변경 신청을 해태한 경우
		② 제12조 내지 제15조의 전문상담 실시 후 제16조 제1항의 상담일지 작성 의무를 해태, 불성실하게 작성한 경우
		③ 제17조 제1항에 따른 평가에서 상담위원의 복무, 근무 태도가 불성실하다고 판단될 경우
		④ 제20조에 의한 클리닉위원으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클리닉 수행을 거부한 경우
		⑤ 제22조 제1항에 의한 수행계획을 지원기업과 협의 없이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(수행 일자 및 내용)
		⑥ 제28조 제1항에 의한 현장지도결과서 평가가 60점 미만인 경우
		⑦ 제28조 제1항에 의한 지원기업 만족도 조사가 70점 미만인 경우
		⑧ 제27조 및 제28조 제2항에 의한 현장지도결과서 제출 일자 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
		⑨ 제28조에 의해 운영기관의 보완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경우
		⑩ 제29조에 의해 세금계산서 발급 일자 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
		⑪ 제23조 제2항에 의해 현장클리닉 협약체결 전에 현장클리닉을 수행한 경우
		⑫ 제24조 제1항의 수행계획의 변경 시 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
	1년 참여 제한	① 당해 연도에 경고 조치를 3회 이상 받은 경우
		② 제25조 제5항에 의한 1일 1개 지원기업에 대한 현장클리닉 수행을 위반한 경우
		③ 클리닉 수행일정 중에 다른 업무(타 사업 컨설팅, 강의 등)를 중복하여 수행한 경우
		④ 비즈니스지원단 (배우자 포함)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클리닉을 받은 경우
		⑤ 비즈니스지원단 (배우자 포함)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클리닉을 수행한 경우
		⑥ 현장지도 결과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
		⑦ 총괄기관의 상담품질 점검시 총괄기관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
	2년 참여 제한	① 제8조에 의한 등록 시 허위사항을 등록한 경우(학력, 자격 등)
		② 제9조에 의한 명칭사용의무를 위반한 경우
③ 제23조에 의한 기업부담금을 대납한 경우		
④ 제31조의 윤리강령을 위반한 경우		
⑤ 제32조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		
⑥ 지원단 사업을 모태로 사계약 체결 후 불법 부당행위를 한 경우		
⑦ 클리닉위원 본인 및 본인의 4촌 이내 친인척(배우자 포함)사업장 클리닉 수행 등 내부자 거래에 해당할 경우		
⑧ 지원기업과 담합하여 허위로 현장클리닉을 수행한 경우		
⑨ 1년 참여 제한 위반사항 중 2건 중복 위반한 경우		
3년 참여 제한	① 위반사항에 따른 참여 제한 합계가 3년 이상인 경우(동일사항 중복위반 건 포함)	
지원기업	경고	① 기업부담금 대납을 요구한 경우
		② 만족도조사가 허위로 이뤄진 경우
	1년 참여 제한	① 경고를 받은 후, 6개월 내 재차 경고를 받은 경우
		② 지원단과 담합하여 허위로 현장클리닉을 신청하거나 기업부담금 대납이 이루어진 경우

- 1) 관리기관은 '경고' ②, ③, ⑪, ⑫항의 위반사항, 운영기관은 '경고' ①, ④~⑩항의 위반사항에 대해 성과관리위원회 심의 없이 경고 조치할 수 있다.
- 2) 참여제한 기간 기준 : 관리기관은 위의 참여 제한이 확정된 경우 관련 클리닉위원 및 현장클리닉 지원기업에 통보하여야 하며, 적용 시점은 통보일(이의제기 시 이의신청 처리 기간은 적용 유보 가능)을 기준으로 한다.
- 참여 제한으로 판정받은 과제는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
- 3) 참여 제한(1년, 2년, 3년)으로 판정될 경우는 해당 참여 제한에 대한 클리닉은 취소 처리되고, 정부지원금과 기업부담금은 환수한다. 다만 회계연도가 경과하였을 경우 환수하지 않을 수 있다.
- 참여 제한이 판정되기 전에는 타 기업 현장클리닉은 진행할 수 있다.
- 4) 총괄기관 소관 개별 지원사업에서 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경우 동 지침에서 정한 동일한 수준의 참여 제한을 할 수 있다.